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
"25-00대대 소방도로 신설 시설공사"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, 제10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사 개요

- 가. 공사 명: 25-00대대 소방도로 신설 시설공사
- 나. 위 치: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원
- 다. 규 모: 1·2공구 콘크리트포장, 3공구 물탱크/옥벽, 4공구 옥외소화전/소화전배관
- 라. 공사기간: 2025.12.31. ~ 2026.12.26.(12개월)
- 마. 공사금액: 732,289,520원(본공사 기준, V.A.T.포함)
- 바. 발 주 자: 국방시설본부
- 사. 설 계 자: (주)삼정엔지니어링
- 아. 감독기관: 주식회사 나로이엔씨 (관리기관 : 강원시설단)
- 자. 시 공 자: 주식회사 일원
- 차. 시공사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: 별도 첨부

2. 용역 개요

- 가. 용역종류: 『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』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
- 나. 용역시기: 세부일정은 시공사와 협의
- 다. 용역비용: **금 2,000,000원(V.A.T.포함)** -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
금 2,500,000원(V.A.T.포함) - 정기안전점검 수행비용
- 라. 용역내용: 『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』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및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
- 마. 용역대상: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

1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		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	
2. 정기안전점검		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	
		1차	2차
정기 안전 점검	높이가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	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	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
종합보고서 작성		정기안전점검 완료 후	

※ 안전점검 대상은 설계도서 내용 및 시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참가자격

- 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나. 조달청 안전점검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
- 다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제3항에 따라 본 사업 설계자 및 시공사의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
- 라. 지정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(단 용역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계속 **B구역(강원지역)에 둔 업체**
- 마. 지정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(단,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)까지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에 등록상태가 정상 상태인 업체
- 바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**별표 1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'건축분야' 또는 '토목분야' 또는 '종합분야' 등록업체**

4. 공동계약: 해당없음

5. 서류 제출 안내

- 가. 제출 기간: **2026.05.27.(수) 09:00 ~ 06.04.(목) 18:00**까지 도착분에 한함
- 나. 제출 장소: **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**
주소 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진미로29-48(사서함 1799호)
우편번호 : 25001
- 다. 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
 - 1)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시 반드시 **담당: 상사 한성주, ☎010-5072-3661**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 - 2) 부득이 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
 - 3)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외 모든 문의사항은 **담당: 품질/안전담당 6급 이형석, ☎010-2734-1096**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제출 서류
 - 1)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[별지 1]
 - 2) 가격 제안서[별지 2]
 - *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,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,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.
 - 3) 기업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
 - 4) 입찰참가제한 현황[별지 3]
 - 5)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[별지 4]

6. 용역 수행기관 지정 방법

- 가. 국방시설본부 시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최고점수를 받은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.
- 나. 당해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며, 제안가격까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.(별도 통보 예정)
- 다.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, 1회 재공고하며, 재공고시 응모한업체가 1개사일 경우,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,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.
- 라.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용역수행기관을 지정 통보하고, 시공사와 용역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마. 발주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선정결과 공고(사업명, 수행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 등) 예정입니다.

7.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

- 가.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8. 기타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제공처

- 가. 참여업체는 『건설기술 진흥법』, 국토교통부 고시 『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』, 국방시설본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.
- 나. 가격 제안 금액은 본 공고서의 용역 비용(부가가치세 제외) 이하로 입찰하여야 하며, 용역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단,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안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.
- 다. 국방시설본부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해당 업체가 본 지정 공고의 1순

위 업체인 경우에는 검토 및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라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토 및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, 차기 모집 공고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.

마. 시공사와 계약 체결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시공사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안전점검 수행계획서
-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원투입계획(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포함)
- 과업 수행에 따른 장비투입계획
- 과업 수행 시 안전조치계획 등

바. 착수신고서 상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점검 수행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사.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, 시공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아.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도급받은 내용을 일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허용된 경우에는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시공사 및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자.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‘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’을 통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.

차.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각 회차별 안전점검 수행 전 시공사 및 감독관에게 사전 통지하고, 수행 후 3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작업일보를 시공사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단, 안전점검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)

- 참여기술자와 투입장비 현황
- 안전점검 결과
- 기타 특이사항 등

카.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

타.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시설단(담당: 품질/안전담당 6급 이형석, ☎010-2734-1096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.

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

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

1. 공 사 명			
2. 시 공 사			
3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			
1종, 2종 시설물 []	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[]		
지하 10m 이상 굴착 []	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or 해체공사 []		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[]	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[]		
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[] · 천공기(높이가 10m 이상), 향타·향발기, 타워크레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· 브라켓 비계 ·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·동바리 · 터널 지보공 or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·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·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		
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[]			

4.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

상 호 명		대 표 자	
소 재 지			
전문분야		전화번호	
보유면허			

5. 안전점검 신청 개요

안전점검 종류	정기점검[] 정밀안전점검[] 초기점검[]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[]		
안전점검 내용	※ 지정공고 참조		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제4항, 제100조의2제2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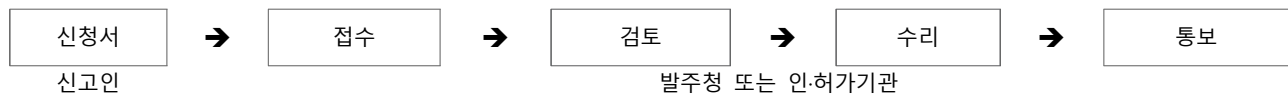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방시설본부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"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" 확인각서

○ 용역명 :

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(사본)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,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(사본)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주 소 :

상 호 :

대 표 자 :

(인)

전화번호 :

국방시설본부 귀하

첨부1. 신용평가등급 기준

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신용평가 등급
AAA	-	AAA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
AA+, AA0, AA-	A1	AA+, AA0, A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0, AA-에 준하는 등급)
A+	A2+	A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
A0	A20	A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)
A-	A2-	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
BBB+	A3+	BBB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
BBB0	A30	B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)
BBB-	A3-	B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
BB+, BB0	B+	BB+, 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0에 준하는 등급)
BB-	B0	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
B+, B0, B-	B-	B+, B0, 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0, B-에 준하는 등급)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